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2일 연만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정하여진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함.

나.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에서 같은 법 제149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을 제94조로 함(안 제1조)

다.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삭제함(제3조제3항과 제4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1) 제1조(목적)에서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함(안 제2조)
- 2) “및”을 “과” 또는 “나”로 함.
- 3) 기타 등 일본식 표현,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4. 검토의견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07.5)에 따라 법령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서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가 「지방자치법」 제14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 명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 조례명을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함.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의 개정
 -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 「지방자치법」 제149조
 -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조항의 삭제
 - ▶ 제3조제3항과 제4항
 - ▶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금번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